

제25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2006.9.4 ~ 9.15(12일간)

專門委員 檢討報告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企劃行政委員會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專門委員 檢討報告書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6년 8월 28일

나. 회부일자 : 2006년 8월 29일

3. 제안이유

고액·상습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체납자 정보공개대상자 심의를 위해 지방세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신설(안 제9조의3)

■ 대상 : 1억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안 제9조의4)

■ 구성 : 위원장(행정부지사) 포함 9인이내

■ 기능 : 체납자의 정보공개 여부 심의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항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써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 포함)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 체납자의 체납정

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각 자치단체에 두도록 하는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세의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명단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이견없습니다.

■ 다만 정보공개대상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써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 포함)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가 1억원 이상 체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군에 체납액이 분산돼 있을 경우에 공개대상이 되는지와 만일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보공개대상자 범위에 대한 제외규정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단기준, 공개대상명단 선정기준일, 공개시기, 처리기준 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함.

붙임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